세종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

2022. 9. 1. 제정
2025. 7. 1. 개정
<세종인권·성평등센터>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세종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33조에 따라 센터 운영과 본교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을 보호하고, 그 침해예방 및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관련자 보호)
① 사건당사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상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사전에 통보한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
② 제3자인 신고인, 대리인 및 참고인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③ 대리인은 대리 진술·대리 답변·대리 표현 등 사건관련자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해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사건관련자가 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직접 진술이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대리인의 대리 진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
④ 조사위원회는 대리인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조력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또는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

제2조의 2(2차 피해의 유형 및 판단기준)
"2차 피해"(「세종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2조 제6호의 2)의 구체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며, 각 호의 행위는 예시적인 것으로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5. 7. 1.>
1. 피해자 등이 원 사건의 신고, 고충상담,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센터의 조사 및 관련 절차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또는 부당한 대우로 인한 피해
   가. 신분·학적·고용 관계의 유지 또는 형성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예: 파면, 해임, 계약해지, 입학·수강·졸업 제한 등)
   나. 인사·학사 관리상의 불이익 조치(예: 징계, 부당한 평가, 지도교수 배정 거부, 연구 참여 제한 등)
   다. 근무·학업 환경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치(예: 강제적 전보, 직무·학업 미부여, 공간 이전 등)
   라. 임금, 상여금, 장학금, 연구비 등의 차별 지급 또는 지원 중단
   마. 전문성 향상 또는 경력 개발 기회의 제한·박탈, 자원의 부당한 제한·제거

바. 집단 따돌림, 괴롭힘, 업무 또는 학업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배제, 협조 거부, 방해 행위

사. 기타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또는 부당한 대우

2.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의 명예, 사생활 등이 침해됨으로써 입는 피해

가. 동의 없는 신원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공개·누설

나. 허위 사실 또는 왜곡·과장 정보 유포로 명예·평판 훼손

다. 모욕, 성적 희롱, 비하, 위협적 발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 가해

라. 동의 없는 사진·영상·개인 기록물 공개·유포

3. 원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추가적인 고통이나 불안감을 야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

가. 사건 은폐·축소·왜곡, 조사 방해·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처리 거부

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위협적 접촉, 면담·합의·고소취하 등의 강요·종용·압박·회유

다. 협박, 보복, 감시, 미행 등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위

라. 피신고인의 부당한 옹호·두둔, 피해자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조장으로 정신적 고통 가해

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피해에 준하며, 원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이 입은 추가적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나 불이익

제3조(신고 접수 등)

① 센터의 전문인력은 피해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신고가 있거나 상담을 통하여 침해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센터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사건의 접수 및 조사·처리 과정에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때 사건당사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관계기관 또는 교내·외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③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과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센터장은 피해자와 피신고인 간 또는 피신고인간의 격리, 피해자의 학습권이나 근로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
2. 수강과목 변경
3. 지도교수 변경
4. 근무부서 변경
5. 그밖에 필요한 조치

제4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인력과 상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사건관련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와 관련자료 제출 요구
2. 사건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사건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이 사건관련자를 조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인 1조로 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④ 조사 시 그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녹화할 수 있다.

제5조(조사중단)

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으로서 센터의 조사만으로는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장은 수사결과 또는 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조사 중인 사건이 수사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교외 절차에 접수되거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조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소환 방법)

① 사건관련자에 대한 소환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하며, 본인에게 당해 사건관련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소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조정)

① 피해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상임조사위원회의 회부 전에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을 결정할 때는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조정한다.

② 조정동의서와 조정안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③ 센터는 피신고인이 제1항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해 지도 및

감독한다.

④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합의사항 불이행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을 상임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심의·의결)

① 조사 시 센터의 전문인력은 사건당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최종조사 및 심의까지의 기간은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상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재조사개시 여부 결정 또는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혐의의 인정과 처리에 대한 심의·의결을 센터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④ 모든 회의 내용은 기록하거나 녹취·녹화할 수 있다.

제9조(조사위원의 위촉과 교체)

상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의 제척·회피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위원을 위촉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제10조(조치의 이행)

①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진행의 세부사항은 상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가 정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 프로그램 진행의 세부사항은 상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가 정한다.

③ 센터장은 피해회복 및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침해행위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사항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회의비)

센터는 상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 위원과 외부전문가에게 본교의 「위원회 회의비 지급 내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자문·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외부전문가)

규정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3항 그리고 이 시행세칙 제3조 제2항의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전임교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또는 법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13조(기록 및 자료 보존)

① 센터는 사건의 상담, 조사, 처리 과정 등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자료 보존은 본교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제2조의2 신설, 제3조 제2항 및 제4항, 제8조 제3항 개정)